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27호 2014. 10. 7.(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2014-55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1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014-256호(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규정) 4
-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014-257호(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
폐지규정)10

【예 규】

-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3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 12
-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4호(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장비관리지침
폐지지침)17
-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5호(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시설관리지침
폐지지침)19
-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6호(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장비표준화지침
폐지지침)21
-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7호(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직종종사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 폐지지침)23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36호(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3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6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84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40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 정 이 유 ○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주 요 내 용 ○ 의원면직의 제한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 인 때 - 인사위원회 중징계 요구 중 일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인 때 - 각급 행정기관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 인 때 ○ 의원면직 제한 사유 반드시 확인 ○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중일 때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 결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제 정 이 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제도장치를 마련하고 ○ 행정기관의 규제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로 연수구와 구민간의 상호 신뢰의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헌장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 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구성(안 제4조~제5조) ○ 헌장의 개정, 헌장의 실천, 헌장의 공표 및 홍보(안 제6조~제8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안 제9조~제10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안 제11조)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5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 현장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이하 “현장”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현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현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현장의 구성) ①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② 현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현장의 개정)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신고 고객의 의견과 구 공무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의 실천) ① 구 공무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구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현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수구와 구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 규제신고 의견 제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제개혁추진단 ☎032)749-7051~2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 폐지규정	☐ 폐지 이유 ○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 기존 운영되고 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은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5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익근무요원복제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기관 인증추진계획(가정복지과-20751)과 관련하여, ○ 개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과 상이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무조건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2013.단체협약서』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 준용규정 신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항목별 세부운영방법 등에 대해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각 사업 담당자의 업무의 정확성 확대 ○ 임신부의 야간근로 제한 조항 신설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제15조(근로시간)제3항에 임신부의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 및 휴일에 미근로 원칙 및 예외조항 신설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35조제1항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항목별 세부운영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밖에 관계 법령 및 각 직종별로 체결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연장은 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1. 근무시간 :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휴게시간 :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0부터 13:00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0조 중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정의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직종별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 근무하는 <u>무기계약</u>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공무직</u>----- ----- -----.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연수구 <u>무기계약</u>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신설	제2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u>공무직</u>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항목별 세부운영방법 등은 「근로기준법」, 그밖에 관계법령 및 각 직종별로 체결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u>무기계약</u>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u>무기계약</u>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의는 「인천광역시연수구 <u>무기계약</u>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u>공무직</u>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의) <u>공무직</u>----- -----<u>공무직</u>----- ----- -----.
제5조(신체검사) <u>무기계약</u>근로자가 될 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검사) <u>공무직</u>----- ----- -----.

현행	개정안
제15조(근로시간) 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추가 제20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1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특별휴가) ① 기간제 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 (생략) 제35조(해고)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한다. 1. ~ 4.(생략)	제15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연장은 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1. 근무시간 :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2. 휴게시간 :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00부터 13: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0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법----- ----- -----. 제25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정의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각 직종별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호의 경우가 아닌 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해고) ① ----- -----공무직----- -----. 1. ~ 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관리지침 폐지지침	☐ 폐지 이유 ○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 기존 운영되고 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관리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관리지침」을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관리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관리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시설관리지침 폐지지침	☐ 폐지 이유 ○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 기존 운영되고 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시설관리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시설관리지침을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시설관리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5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시설관리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시설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표준화 지침 폐지지침	☐ 폐지 이유 ○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 기존 운영되고 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표준화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표준화지침」을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표준화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표준화지침 폐지지침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민방위 장비표준화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 직종종사 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 폐지지침	☐ 폐지 이유 ○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 기존 운영되고 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 직종종사 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 직종종사 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을 폐지함.

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 직종종사 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4. 10. 7.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7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 직종종사 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 특수 직종종사 대원 자체교육인정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법 등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위협의회는 해당 지역방위협의회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양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향토방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협의회 위원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관계 법령의 예비군 지원 및 육성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며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연수구 전지역 향토방위작전의 현장지휘권을 총괄하는 연수구 지역대장에 대한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진을 통해 지역사정에 밝아 향토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협의회 구성 등) 제3항에 제10호를 신설.
10. 제17사단507여단2대대 연수구지역대장
- 제4조의2(수당 등) 조항 신설.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 방위협의회는 본 조문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161 FAX 749-715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개정(안) : 붙임 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관련법규 : 붙임 3

붙임 1)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7사단507여단2대대 연수구지역대장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 방위협의회는 본 조문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9.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9. (현행과 같음) <u>10. 제17사단507여단2대대 연수구 지역대 장</u> <u>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 방위협의회는 본 조문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붙임 3) 관련법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2.20]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2.20]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지역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9. 5. 18 조례 제245호

(일부개정) 2006.07.27 조례 제 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12.01 조례 제 59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문개정) 2011.07.29 조례 제7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장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국가정보원인천지부 수사관
4. 601 기무부대 담당관
5.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장
6. 제17사단 102연대 2대대장
7. 연수경찰서장
8. 인천공단소방서장
9. 연수구 재향군인회장

④ 위촉 위원은 기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담당 부서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방위 업무 담당 부서장

3. 심리전담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
4. 작전담당간사 :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작전장교
5. 정보담당간사 :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보안업무관
6. 예비군담당간사 : 제17사단 507여단 2대대 동원과장
7. 경찰담당간사 :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각 분야별 담당 간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구 지원 본부”라 한다)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 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구 지원본부는 연수구청 내에 두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각 동 주민센터에 두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 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2와 같다.
- ④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② 종합상황실은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1999. 5.18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 ③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2011.7.29 조례 제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총무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공고 제2014 - 83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5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조례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7조)
- 기금 존속기한 연장가능 명시(안 제3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10.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032-749-7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7조(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가정복지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견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사유

- 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군·구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달라 혼란과 불편이 야기됨으로 이를 시조례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 나. 지역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여,
- 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강화 권한(특정구역 지정)을 시·도지사 권한에게 위임
- 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시·도 조례로 통일
- 다.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자율관리구역지정,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749-8643, FAX 749-8639(asj99@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양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4호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결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주민협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는 위원장 옥외광고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으로 한다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은 수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 1인 이상을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9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의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

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4.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이하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 치 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이하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떨어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0㎡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초과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는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현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개정 2014. .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및 방법	비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 시 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개정 2014. . .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시등(개당)	5,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 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및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및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15,000원	

더하는 금액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등		
1)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	5,000원	
거. 전단(1,000매)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 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조명의 색이 변하지 않는 LED 소재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4.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개정 2014. . .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5]<개정 2014. . .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0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개정 2014. . .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이하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 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 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법 제20조		
하지 않은 경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 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위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부과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illegible]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연수구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
조에 따른 안전점검 심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직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illegible]

364mm×257mm[일반용지(1종) 70g/m²]

공공계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illegible]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
위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
위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illegible]

364mm×25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 강 자	성명
	소속 업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